#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12

발의연월일: 2022. 8. 25.

발 의 자: 어기구·김종민·김홍걸

박광온 • 박상혁 • 박 정

서동용 · 서삼석 · 송갑석

윤재갑 • 윤준병 • 이개호

황 희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 야 하고,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 역산림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그런데 이 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적인 계획이기에 기후변화 및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중도에 기본계획의 수정이나 정책적 판단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,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함에도 현재는 이러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산림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 등).

## 주요내용

- 가. 산림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11조의2 제1항 신설).
- 나.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).

###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협의하여"를 "협의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평가하고"를 "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"로 한다.

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.
  - 1.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
  - 2.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
  - 3.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
  - 4.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·시행 중인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산림기본계획의 수립·시	제11조(산림기본계획의 수립·시
행)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1	행) ①
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	
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	
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	
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	
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	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<u>협의하여</u>	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심
	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
	<u>다)의 심의를 거쳐</u>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	③
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	
20년마다 수립하되, 산림의 상	
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	
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	
이를 변경할 수 있다. < <u>후단</u>	
<u>신설&gt;</u>	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
	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
	<u>다.</u>

- ④ (생략)
- 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의 추진실적 등을 <u>평가하고</u>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- ⑥ ~ ⑧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④ (연행과 같음)	
⑤	_
	_
	_
<u>매년 위원회의 수</u>	]
의를 거쳐 평가하고	_

- ·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- 제11조의2(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산림의 합리적인 보 전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 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.
  - 1.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

     본계획의 수립
  - 2.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 림기본계획의 변경
  - 3.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

     치단체의 지역산림계획 추진

     실적의 평가
  - 4.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